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78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최기상・이건태・이기헌

박상혁•박 정•서영석

김한규 • 박희승 • 임미애

백승아 · 김성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국정조사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본회의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되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있음(제9조).

이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본회의에서 조사 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 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 를 받는 규정이 없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중단과 관계 없이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므 로(제15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활동기간 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법률 제 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경우 본회의는 의결 이전에 조
	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아야
	<u>한다.</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